

의안번호	2204483
의 퇴 인	박성민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7.
추계번호	24A4181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의 4 (상권기획자에 대한 지원)	○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상권 발전·활성화 및 지역상권 내 관리·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기획자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6조의9 (상권발전기금의 설치 및 재원)	○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발전·활성화 및 지역상권 내 관리·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·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의 4 (상권기획자에 대한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6조의9 (상권발전기금의 설치 및 재원)	

2. 상세 사유

□ 상권기획자에 대한 지원(안 제26조의4)

-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상권 발전·활성화 및 지역상권 내 관리·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기획자를 지원할 수 있음
-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정부가 지원할 상권기획자의 평균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데, 개정안에 따른 지원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원 비용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져(재량지출)¹⁾ 현 시점에

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- 참고로,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상권활성화사업(4154-305)」 사업으로 다양한 상권의 지원 및 민간주도의 상권 개발을 위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·운영, 특화상품 개발,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권 개선 아이디어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2025년도 상권활성화사업(4154-305)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3년 결산	2024년 본예산	2025년 예산안
총사업비	30,361	24,857	22,381

- 자료: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(세부사업설명자료)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상권발전기금의 설치 및 재원 (안 제26조의9)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상권 구성원의 출연금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·보조금, 안 제26조의10제2항²⁾에 따른 사업 수익금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함
- 다만, 기금 재원이 되는 사업 수익금, 차입금 등을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기금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함

□ 이에 정부의 상권기획자 지원, 상권발전기금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
- 1) 안 제26조의4(상권기획자에 대한 지원)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기획자가 제26조의2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기획자를 지원할 수 있다.
- 2) 안 제26조의10(지역상권발전기금의 운용 등) ② 상권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1. 지역상권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
 2. 지역상권의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
 3.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전문보육 등 역량강화 사업
 4. 그 밖에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

IV. 작성자

□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